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병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7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4월 01일
발 의 자 : 고병국 의원(1명)
찬 성 자 : 김재형, 김종무, 김태수, 김호평, 김희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양민규, 이성배,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한기영, 황규복 의원(16명)

1. 제안이유

- 공공건축물 신축시 한옥이 거의 없는데, 이는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 일반 건축물 대비 한옥의 건축비가 고가이므로 자치구 등의 예산 사정상 부담이 되기 때문임. 아울러, 시의 예산지원은 민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 소유 등 공공한옥 건축시 이에 대한 지원은 없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비 지원 대상 사업에 공공한옥을 신축할 경우와 한옥자재창고 등 한옥건축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여 공공건축물의 한옥화 등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옥의 지원 대상으로 공공한옥 및 한옥자재창고 등 한옥건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안 제20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나. 공공한옥의 범위를 자치구 또는 시 투자·출연기관 소유 한옥까지 확대
함(안 제20조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한옥(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한옥)
5. 한옥자재창고 등 한옥건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은 제20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유인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이하 “공공한옥”이라 한다)”을 “제20조제4호에 따른 공공한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지원대상)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등록한옥 2. 한옥마을 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건축양식</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0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공공한옥(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한옥)</u></p> <p>5. <u>한옥자재창고 등 한옥건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 ⑤ (생략)</p> <p><u><신 설></u></p>	<p>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시장은 제20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u></p>

제32조(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지정)

시장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유인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이하 “공공한옥”이라 한다) 등 건축자산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체험관·교육관 또는 민박 등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 공공 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지정)

----- 제20조제4호에 따른 공공한옥 -----

-----.

문서번호

2021032600000004

비용추계서

요청인 : 고병국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김나래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3.26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44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 I. 비용추계 요약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공공한옥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6항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자치구 공공한옥 건립 시비 지원

나. 전제

- 서울시 공공한옥 건립지원 전제
 - 기 간 : 2022~2026년(5년)
 - 건립 개소수 : 25개소(자치구별 각 1개소, 연도별 각 5개소)
 - 개소별 건립면적 : 500m²
- 조달청 기준 기존 공공건축물 평균 공사비는 약 219만원/m², 한옥 공공건축물 평균 공사비는 약 327만원/m²으로 약 1.6배임*
- 서울시는 자치구 공공한옥의 경우, 공공건축물 대비 한옥 공사로 인해 증가하는 공사비분(60%)을 시비 지원 전제
- 공사비는 유사 규모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집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
 - * 한옥 공공건축물의 공급현황 및 이용자 인식 특성(건축공간연구원, 2020.11.)
 -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서울시는 각 자치구당 1개 공공한옥 건립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5개년 간 배분하여 추계
- 시비 지원분은 공공건축물 공사비 대비 60%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24,645,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 자치구 공공한옥 시비지원	4,929,000	4,929,000	4,929,000	4,929,000	4,929,000	24,645,000
	소계 (b)	4,929,000	4,929,000	4,929,000	4,929,000	4,929,000	24,645,000
□ 총 비용 (b-a)		4,929,000	4,929,000	4,929,000	4,929,000	4,929,000	24,645,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석관(주무관) 김나래

☎ 02-2180-7944

e-mail : nrkim77@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자치구 공공한옥 건립 시비지원(안 제21조제6항)

2. 세부추계내역

가. 총 비용 ≙ 24,645,000천원(연 평균 4,929,000천원)

나. 자치구 공공한옥 건립 지원비

- 자치구 공공한옥 건립 지원비 : 24,645,000천원

$$\equiv \sum_{i=1}^5 (\text{연간비용})_i \equiv 24,645,000 \text{천원}$$

i = 비용추계 연차: 5년(2022~2026년)

- 연간비용 : 4,929,000천원

$$\equiv \text{개소당 지원비} \times \text{지원개소}$$

$$\equiv 985,800 \text{천원} \times 5 \text{개소}$$

$$\equiv 4,929,000 \text{천원}$$

- 개소당 지원비 : 985,800천원

$$\equiv \text{기준면적} \times \text{공공건축물 m}^2 \text{당 공사비(어린이집)} \times \text{시비지원비율}$$

$$\equiv 500 \text{m}^2 \times 3,286 \text{천원/m}^2 \times 60\%$$

$$\equiv 985,800 \text{천원}$$